

“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서울 만들기”

문서번호	경영기획팀-37
보존기간	준영구
결재일자	2023.01.04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대표이사 방침 제(4)호

★사원	팀장	본부장	대표이사
김지우	유동균	백승우	01/04 이창기
협 조			
실장	주한식		

2023년 서울문화재단 업무추진비 집행계획(안)

2023년 서울문화재단 업무추진비 집행계획(안)

2023년도 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의 계획 수립을 통해 연간 효율적인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 투명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1 집행개요

- 관련근거
 -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(행정안전부)
 - 2023년도 서울시 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(서울특별시)
 -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(행정안전부)
 -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(국민권익위원회)
- 집행기간: 2023.1.1. ~ 2023.12.31.(1년간)
- 예산과목: 운영경비(총괄)>업무추진비>사업업무추진비
- 소요예산: 一금일억일천구백팔십사만원정(₩119,840,000)

2 집행대상 및 준수사항

- 집행대상 주요직무활동
 -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연회비,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약,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
 - 시책홍보를 위한 기념품 및 식사 제공
 -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회의, 간담회, 행사
 - 소속 상근직원, 현장 부서 근무자 및 관할 유관기관 임직원의 경조사 관련 축의·부의 금품 집행
 - 업무추진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
 -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·방법·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

□ 집행준수사항

- 업무추진비 집행 시 구체적인 집행사유 기재
- 접대비는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라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하는 식사, 다과, 주류, 음료, 그 밖에 준하는 것은 1인당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편성 및 집행하며, 기념품·격려금품 지급의 경우 1인당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 및 집행
-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되, 기관장 등 간부 위주 집행 억제하고 부서 또는 사업단위로 배분 편성
- 현금 지출은 격려금·축의금·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
- 사업추진과 관련없는 단순 내부직원 격려를 위한 집행 불가
- 업무추진과 관련성이 적은 시간과 장소 사용 제한
- 업무추진비와 관서업무비는 사업비 내 편성 금지 (수탁사업은 편성 가능)

3

행정사항

□ 집행기준의 준수

-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(행정안전부),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(국민권익위원회)에 근거한 투명한 예산집행 추진

□ 집행관리 및 책임 : 업무추진비 사용자

- 붙임 1.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(행정안전부) 1부.
2. 2023년도 서울시 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(서울특별시) 1부.
3.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(행정안전부) 1부.
4.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(국민권익위원회) 1부.
. 끝.